

VI.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천원)

용도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0,170,790,110	4,017,253,380	△ 20,925,672	14,167,117,818
행정재산	9,817,076,755	4,015,860,705	△ 19,652,664	13,813,284,796
잡종재산	353,713,355	1,392,675	△ 1,273,008	353,833,022

나. 물품

(단위 : 천원)

품목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연도말 현재액
		증	감(△)	
전기기계 등 12종 (23,863점)	122,930,350	43,255,822 (15,051)	△ 6,922,028 (△ 1,060)	159,264,144 (37,854)

※()는 수량임.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886
----------	-----

2001년 6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 중 “제41조 및 제43조”를 “제34조 및 제36조”로, “교육장, 교육기관장”을 “교육기관장, 교육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제7호 중 “법 제137조 및 제138조”를 “법 제137조”로 하고, 동조 동항 제8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 이상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1일
- 다. 상정일자 :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 6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건진)

- 가. 제안이유
 -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1건당 20,000원으로 정함(안 별표).
 -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수료감면대상자를 생활보호법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변경함(안 제6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태호)
- 가.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사무에 대한 수수료 부과(안 별표)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4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취급 석유제품으로 “부생연료유판매업”을 신설하였고, 이에 석유사업법 제31조(수수료)에 근거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시 20,000원의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수수료 산정기준은 원가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000원은 원가의 82% 수준이며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시 수수료는 현행 3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 ※ 부생연료유 : 원유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남사를 원료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때 남사정제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서 주로 산업용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 ※ 용제 : 원유분해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페인트 등을 녹이는 용액으로 신나류 등을 말함.
- 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뀜에 따라 수수료감면대상 중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임(안 제6조제2호).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87
----------	-----

2001년 6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 6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건진)
-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2000.10.20)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추가하며,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공유재산을 위탁하는 때에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대상범위·허가기간·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 사항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5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제2항 신설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포함함(안 제7조).
 - 서울형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등에게 토지매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산매각대금의 분납기간 및 분납이자율을 조정함(안 제22조).
-현행 : 매각대금 5년 이내, 이자 연8% 분할납부
-개정 : 매각대금 10년 이내, 이자 연5% 분할납부
 - 공유지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분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분을 산출하도록 함(안 제25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 신설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전세금의 산출방법,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을 정함 (안 제25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분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